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연월일	2026.08.21.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훈, 최충열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2026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변경 반영
- 성심원 중간의집(자립생활관) 시설 사용 종료에 따라 공개매각 추진 후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증액 편성
- 보육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비 증액 편성
-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조성액 [㉠]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2,133,534	1,290,139	3,130,550	△1,840,411	293,123	문화관광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743,221	5,831,810	7,501,000	△1,669,190	1,074,031	일자리경제과
사 회 복 지 기 금 사회복지진흥계정	301,926	595,383	30,000	565,383	867,309	복지정책과
보 육 기 금	1,200,512	2,634,000	3,684,356	△1,050,356	150,156	여성보육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279,638	830,950	1,118,015	△287,065	1,992,573	도시계획과

II. 검토사항

기 금 분 야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1)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 또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무활동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증액분 146,434천원이 기존 재무활동 146,689천원의 20%인 29,337천원을 초과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음.

※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기정액	변경액	증 감	항 목	기정액	변경액	증 감
합 계	3,277,239	3,423,673	146,434	합 계	3,277,239	3,423,673	146,434
전 입 금	1,250,000	1,250,000	0	비 용 자 성 비	3,130,550	3,130,550	
이 자 수 입	40,139	40,139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예치금회수	1,987,100	2,133,534	146,434	예 치 금	146,689	293,123	146,434

【일자리경제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융자금	5,000,000	2,000,000	3,000,000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리는 0.8%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에는 당초 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중 38개 업체에 18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당초 지원규모의 약 94%가 소진되는 등 융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억원을 증액하고 총 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추정 편성사유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융자사업으로서, 2026년도 상반기에 당초 융자지원 규모 20억원의 대부분이 소진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특히 상반기에 38개 업체에 18억 8,400만원이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원규모만으로는 하반기에 예상되는 추가적인 융자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번 증액은 일반회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액과는 달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 회수액 증가 및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계획액 10억 1,428만원에서 실제 27억 4,32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가용재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융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운용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본예산 편성 및 추경 증액 규모의 적정성

- 다만, 이번 추경은 당초 20억원이었던 용자사업비를 30억원 증액하여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5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증액인 만큼, 단순히 상반기 집행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최근 3개년 실제 지출액을 보면 2023년 68억 5,000만원, 2024년 56억원, 2025년 50억 9,8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용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연간 용자수요 및 실제 집행규모가 대체로 50억원 내외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과거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개년 예산 비교현황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집행잔액
2023	7,000,000	6,850,000	150,000
2024	6,000,000	5,600,000	400,000
2025	6,000,000	5,098,000	902,0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는 최근 3개년 지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을 편성한 후, 상반기 사업 추진 이후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액과 과거 실제 집행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최근 3개년의 집행실적과 사업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금 재원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요에 비해 본예산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치금 회수액이 약 10억원으로 예상되어 50억원 규모의 융자성 사업비를 편성하기에는 재원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예산 20억원 편성 이후 추경을 통해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최근 집행실적과 유사한 50억원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현 구조를 고려할 때,
-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예상되는 사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추후 기금 재원 여건이 확인되면 추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물론 본예산 편성 당시 기금의 가용재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이후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향후 예상되는 융자수요와 기금 회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규모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금회 증액액 30억원이 실제 하반기 융자수요에 근거하여 산

정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접수 또는 대기 중인 융자신청 규모, 하반기 예상 신청업체 수 및 업체당 평균 융자액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토대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의 안정성

- 한편, 융자금은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향후 회수되는 기금성 자금이라는 점에서 추가 융자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및 향후 융자금 회수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회 30억원의 추가 융자를 실시할 경우 향후 신규 융자수요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융자금 회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융자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융자실적 및 최근 사업 집행추이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융자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치금 회수액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사업수요 및 과거 집행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금회 증액 규모가 실제 예상되는 하반기 융자수요 및 기금의 운용여건을 충분히 반

영하여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금회 추경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에는 과거 집행실적과 예상수요,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사업규모를 산정하는 등 계획적인 기금운용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예치금	1,074,031	2,345,085	△1,271,054

○ 예치금 감액 편성의 적정성

- 예치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당장 지출할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향후 융자사업 등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금번 예치금은 당초 23억 4,509만원에서 12억 7,105만원 감액한 10억 7,40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약 54.2% 감소한 규모로, 이러한 감액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내 여유자금인 예치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금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르면 수입계획은 총 68억 4,609만원에서 85억 7,503만원으로 17억 2,89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재원은 예치금 회수액으로 당초 10억 1,428만원에서 27억 4,322만원으로 17억 2,89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변 경				지 출 계 획 변 경			
항 목	기정액	변경액	증 감	항 목	기정액	변경액	증 감
합 계	6,846,085	8,575,031	1,728,946	합 계	6,846,085	8,575,031	1,728,946
전입금	2,000,000	2,000,000	0	비용자성 사업비	2,501,000	2,501,000	0
보조금	0	0	0	용자성 사업비	2,000,000	5,000,000	3,000,00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용자금회수	3,751,810	3,751,81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014,275	2,743,221	1,728,946	예치금	2,345,085	1,074,031	△1,271,05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0,000	8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반면 지출계획에서는 용자성 사업비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30억원 증가하고, 예치금은 23억 4,509만원에서 10억 7,403만원으로 12억 7,10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기존에 예치하고 있던 기금 여유재원을 회수하여 용자사업 확대에 활용하는 구조라 할 것이고,

- 특히 융자성 사업비의 증액 규모가 3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예치금 감액은 단순히 예치금 잔액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재원을 중·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확대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재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더불어 예치금은 향후 융자사업의 재원 및 기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의 성격도 있으므로, 예치금 잔액을 10억 7,403만원까지 축소하는 것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특히 향후 융자금 회수 규모 및 시기, 추가적인 융자 수요, 기금의 필수 지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번 융자성 사업비 증액이 실제 중·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근거한 것인지, 증액된 30억원이 연내 실제 융자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융자 확대에 따른 기금의 회수 가능성 및 향후 재원 운용계획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고,
- 따라서 예치금의 감액 자체는 융자성 사업비 확대에 따른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편성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예치금 규모를 절반 이상 감액하는 만큼 기금의 유동성 및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예치금 적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예치금 감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중·소상공인 융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융

자성 사업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예치금 규모를 축소하는 재원 재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음. 예치금 회수액을 증액하여 용자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용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예치금이 당초보다 12억 7,105만원, 약 54.2% 감소하는 만큼 향후 용자금 회수 및 추가적인 자금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증액된 용자성 사업비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용자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사업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예치금	867,309	281,298	586,011

- 금번 사회복지진흥계정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867,309천원으로, 기정액 281,298천원보다 586,011천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성심원 중간의 집 매각대금 586,011천원을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전출한 후 해당 재원을 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수입계획에서도 ‘기타회계전입금’ 586,011천원이 동일하게 증액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동일 재원의 수입 반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재원의 발생 및 수납 경위, 사회복지기금으로의 귀속 필요성 및 금번 추경의 중복 편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공유 재산매각수입금」 검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해당 매각대금은 2025회계연도에 이미 전액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된 재원이므로, 이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의 중복 편성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과 이에 대응하는 기금전출금을 함께 감액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도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감액과 연계하여 기타회계전입금 586,011천원과 그에 대응하는 예치금 586,011천원을 함께 감액하는 것이 예산 간 연계성과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해당 매각대금을 사회복지기금에 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2025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수납·결산된 재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2027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과 사회복지진흥계정의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을 각각 연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보육과】

□ 보육기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민간이전	2,704,556	2,604,556	100,000

○ 사업 개요 및 증액 사유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줄임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번 민간이전은 당초 26억 455만원에서 1억원 증액한 27억 455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6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81.2%에 달하여 당초 편성액만으로는 연말까지 기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하반기 신규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을 추진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어린이집별 교직원 채용 여부와 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인원과 지원기간이 달라지는 구조로, 연초 예산편성 당시의 예상 수요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예산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임.

○ 최근 집행실적 및 하반기 수요

-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은 2023년 5억 4,624만원에서 2024년 6억 6,546만원, 2025년 8억 6,52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같은 기간 88%에서 92%, 9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실제 재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최근 3개년도 비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3년	622,710	622,710	546,242	76,468	88%
2024년	725,232	725,232	665,457	59,775	92%
2025년	925,272	925,272	865,283	59,989	94%

- 또한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 이미 81.2%가 집행된 가운데 하반기 개월 예정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 수요가 발생할 예정인 만큼,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계속 지원과 신규 수요를 감안할 경우 당초 편성액 대비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증액 규모 및 향후 예산편성

- 다만 금번 증액액 1억원이 기존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족분과 하반기 신규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지원소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별 지원인원, 잔여 지원기간 및 월별 소요액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아울러 최근 3개년간 집행률이 88%에서 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실제 사업수요가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편성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도별 지원대상 및 신규 개원 추이 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1억원 증액은 2026년 실제 집행추이와 하반기 추가 지원수요를 반영하여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집행실적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증액 규모가 실제 부족분과 신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민간이전 증액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사업의 집행률 상승과 기존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족분, 하반기 신규 지원대상 발생 등에 따라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실제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임. 특히 최근 3개년간 집행액과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지원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도 확인되는바, 금년도 집행전망을 반영한 증액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에도 유사한 예산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별 지원 인원과 신규 개원 규모, 지원기간 등을 기초로 연간 수요를 보다 면밀히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증액예산 또한 실제 지원수요에 맞게

집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예치금	150,156	43,674	106,482

○ 증액사유 및 예치금의 성격

- 금번 예치금은 당초 4,367만원에서 1억 648만원 증액한 1억 5,016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보육기금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차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집행부에 따르면 2025년도 모범어린이집 및 공유어린이집 등 보육정책사업의 지원대상이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집행액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재원이 예치금으로 남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증액은 당해연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치금을 추가 확보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전년도 기금 결산 결과 실제 조성된 재원을 금년도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회계적·운용계획상의 조정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기금 조성 및 운용 추이

- 최근 3개년 연도말 보육기금 조성액을 보면 2023년 41억 8,646만원, 2024년 28억 2,808만원, 2025년 12억 51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아래와 같음.

최근 3개년도 비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말 조성액		
2023년	2024년	2025년
4,186,460	2,828,079	1,200,512

- 이는 보육정책사업의 집행 규모와 기금 재원 운용 여건 등에 따라 연도별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번 예치금 증액만을 기준으로 기금의 여유재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2억 51만원인 가운데 금번 예치금이 1억 5,016만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치금 증액 규모는 전체 기금 규모에 비추어 일정 부분 재원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보육정책사업의 집행수요와 기금 재원의 변동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치금 운용의 적정성

- 한편 전년도 사업 집행 감소로 발생한 잔여재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보육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치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1억 648만원의 증액분이 2025년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 향후 해당 재원을 어떠한 보육사업에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와 함께 최근 3개년간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년도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금 자원 확보 및 사업수요를 감안한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예치금 1억 648만원 증액은 2025년도 보육정책사업 집행잔액 등 결산 결과에 따른 자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잔여재원을 기금 내에 유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증액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최근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치금의 적정 규모와 향후 활용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예치금 증액은 보육정책사업의 지원대상 축소 등으로 2025년도 실제 사업집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면서 발생한 결산상 잔여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신규 지출수요에 따른 증액보다는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자원 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치금 증액 자체는 전년도에 실제 발생한 잔여재원을 기금에 보유하여 향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최근 3개년간 보육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41억 8,646만원에서 12억 51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예치금 증액을 단순한 기금 여유재원의 확대로 볼 것이 아니라 기금 전체 재원 규모와 향후 사업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의견

-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기금별 사업수요 및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적절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 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자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금의 유동성을 고려한 운용이 필요함.
- 사회복지지금은 매각대금의 기금 전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기금은 사업수요를 반영한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금번 변경안은 각 기금의 결산 결과와 사업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금별 재원 여건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Ⅳ. 참고자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제20조(기금의 결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제2조(기금의 조성)
 - 제3조(기금의 용도)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 ⑤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
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